

제5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09. 11. 2.(월) 10:00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이경자 부위원장
송도균 위 원
이병기 위 원
형태근 위 원 (5인)
4. 불참위원 : 없 음
5. 회의내용
 - 가. 성원보고
 - 나. 국민의례
 - 다. 개회선언
 - 라. 회의공개여부 결정
 - 마. 전차회의록 확인

바. 의결사항

1)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 (2009-53-223)

-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개정 방송법('09.7.31. 공포)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, 원안대로 의결함.
- 주요 내용
 - ㉠ 일간신문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출 자료 및 공개 방법
 - 지상파방송,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(PP)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직전 사업 연도의 자료를 제출
 - 방통위가 문화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·단체가 인증한 전체 발행부수, 유가 판매 부수(가구, 영업장, 가관으로 구분),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제출
 - 방통위는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 자료를 공개
 - ㉡ 일간신문의 구독률 산정 기준
 - 장래 가구 추계 통계(통계청 조사·발표)에 따른 직전 연도 전체 가구 수 중에서 특정 일간신문의 직전 연도 연평균 유료 구독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
 - ㉢ 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(SO) 간의 상호진입 범위
 - 위성방송사업과의 규제 형평성 보장이나 과도한 지역 영향력 방지 등을 고려하여 33%로 제한
 - ㉣ 종합유선방송사업자(SO), 중계유선방송사업자(RO), 승인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(종합, 보도, 홈쇼핑 PP)의 허가·승인 유효기간
 - 허가·승인 유효기간을 5년(기존 3년)으로 연장하되, 허가·승인 및 재허가·재승인 심사 결과 시청자 권익 보호, 공적 책임 실현, 공익성·공공성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단축 가능
 -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신청하는 재허가·재승인부터 적용
 - ㉤ 방송연장 명령제도 및 허가 등의 유효기간 단축 등
 - 방통위는 방송사업 허가·승인 취소 사업자에 대해 방송연장을 명령할 수 있으며, 해당 사업자는 동 명령내용을 시청자에게 고지
 - 방통위는 취소 사업자의 방송시설 등을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권고
 - [별표1]의 처분 기준에서 '업무정지' 처분을 '업무정지 및 유효기간 단축'으로 개정

⑥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추가 직무, 구성 및 운영

- (추가 직무) ①신문 구독률을 시청 점유율로 환산하기 위한 기준·방법 등에 관한 사항, ②방송 종사자 대상 미디어 다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, ③그 밖에 방송의 여론 다양성 증진과 관련된 사항 중 방통위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

※ 방송법에 규정된 직무 :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, 매체 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,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·연구

※ 개정법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 간 유예된 시청점유율 제한(법 제69조의2)에 따른 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등은 금번 시행령 개정에서 제외

- (위원 구성 및 자격) 위원은 법률, 학계(신문·방송·통계·행정·법률·경제), 업계(방송·신문·인터넷·광고)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7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지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 가능
-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함

⑦ 사전심의 대상 방송광고 규정

- 방송광고 사전 심의에 대한 위헌결정('08.6.26)에 따라 방송광고 사전 심의를 규정한 시행령 제21조의2를 삭제

⑧ 가상광고 시행 기준

- 허용 장르는 운동경기 중계방송에 한하고, 방송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5 이내로 하며(단, 경기장 광고판 대체는 제외), 전체 화면 크기의 4분의 1 초과 금지
- 관련 법령에 의해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허용시간 제한을 받는 상품 등을 노출 금지
- 방송 전에 가상광고가 포함된 사실을 자막으로 고지
- 경기 주관단체·중계권 보유자 등과 사전협의 등

⑨ 간접광고 시행 기준

- 허용 장르는 오락 및 교양 분야에 한하되 어린이프로그램과 보도·시사·논평·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요하는 방송프로그램은 제외
- 방송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5 이내(단, 불가피한 자연스러운 노출은 제외)로 하며, 전체 화면 크기의 4분의 1 초과 금지
- 부적절한 노출 효과는 금지하며, 방송 전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었음을 자막으로 고지

㉠ 허위·과장 광고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

- [별표 4]의 위반행위의 종류 별 과태료 부과 기준에 '허위·과장 광고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한 자'를 신설하고,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1,000만원으로 설정

☞ 심의규정 등 위반시 과징금 부과 기준

- 동 과징금의 근거조항으로 법 제100조제1항을 추가
- 「별표5」 위반행위의 종별 및 과징금의 금액'에 심의규정 및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경우, 시청자 불만 처리 결과에 따라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명시

☞ 기타 규제완화 등이 필요한 사항

- 「행정제재 처분합리화 세부기준」에 따라, [별표1]의 허가 취소 등의 처분 기준에 가장 사유와 감경 사유를 규정하는 등 행정제재 처분의 기준 개선
- 특수관계자 중 친척의 범위를 「자본통합시장법」, 「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과 동일하게 6촌 이내로 완화
-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('09.6)에 따라 방송발전기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신설하고, 이의신청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

사. 보고사항

1) '신규 방송사업 정책 TFT'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
-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, '신규 방송사업 정책 TFT'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,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접수함.

- 주요 내용

< 목 적 >

- 방송법 개정에 따른 종편·보도PP 선정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방송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, 어느 때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책 마련과 절차 진행이 필요
-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

<구성 방안>

- TFT는 정책방안 마련, 사업자 선정 업무 등을 담당할 실무조직과, 정책·법률·회계 등 전문 분야 자문 등을 담당하는 지원조직으로 구성
- 실·국장 5인으로 구성된 '정책협의회'를 구성하여 실무조직에서 마련한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담당

※ 기획조정실장,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, 방송정책국장, 통신정책국장, 이용자보호국장으로 구성

- ‘정책협의회’ 밑에 방송정책국장을 실무반장으로 하고, 총괄팀, 정책1팀, 정책2팀으로 실무조직 구성
- (총괄팀) 방송채널정책과장을 팀장으로 하고, 신규방송사업 정책방안 마련, 심사 기준 마련, 심사위원회 구성 등의 업무 담당
- (정책1팀) 과·팀장급을 팀장으로 하여, 시장상황 등 분석, 시장활성화 방안 검토, 규제제도 개선 대안 발굴 등의 업무 담당
 - ※ 정책1팀 업무 중 당초 ‘신규사업자 지원방안 검토’를 ‘시장활성화 방안 검토’로 수정
- (정책2팀) 과·팀장급을 팀장으로 하고, 신규사업자 선정절차 기획·집행, 공청회·토론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, 국회·언론 지원 등의 업무 담당
- 지원조직은 비상설 3개 팀으로 구성·운영
 - (내부지원팀) 인·허가 업무 경험이 있거나 방송에 전문성이 있는 과·팀장급으로 구성
 - (외부지원팀) 방송·법률·경영·회계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
 - (법률자문팀) 방통위내 변호사로 구성

아. 기 타

1)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기로 함.

6. 폐 회 (17:20)

- ※ 11:35 정회, 15:30 속개, 16:40 정회, 16:50 속개